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9212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최기상·이성윤·정일영  
안도걸·김영환·황운하  
조승래·김남근·정태호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 주택 개조비용 지원 등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원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 물리적 주거시설의 제공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음.

해당 조례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주자의 입

주지원 및 상담, 주택 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원주택”이란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말한다.

4.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주거약자용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건설하여야 한다”를 “건설하여야 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택”을 “주택(지원주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주거약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 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주거약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업무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주택에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주택의 의무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u>&lt;신 설&gt;</u></p><br><p><u>&lt;신 설&gt;</u></p>                                     | <p>제2조(정의) -----<br/>-----.</p> <p>1.·2. (현행과 같음)</p> <p>3. <u>“지원주택”이란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말한다.</u></p> <p>4. <u>“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주거약자용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u></p> |
| <p>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 략)</p> <p><u>&lt;신 설&gt;</u></p><br><p>4. (생 략)</p> | <p>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br/>-----.</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
| <p>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p>   | <p>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br/>-----</p>  |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주거약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 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주거약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유지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 ① -----  
-----  
-----  
-----  
-----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업무협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원주택에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